

자 료 위 탁 회 원 운 영 규 칙

제 정	2004. 1. 1.
개 정	2004. 3. 1.
개 정	2005. 5. 11.
개 정	2007. 6. 1.
개 정	2008. 9. 9.
한국영상자료원 규칙 제29호 개 정	2014. 9. 26.
한국영상자료원 규칙 제40호 개 정	2015. 6. 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자료원 자료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과 한국영상자료원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회원”이라 한다)가 한국의 영화, 영상문화의 발전과 후대 전승을 위한 영상자료 보존에 상호 동의하고 이를 위해 지켜야 할 권리, 의무 및 자료원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회원이라 함은 자료원의 자료수집, 보존 및 활용 등의 사업에 동의하여 자료를 위탁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료원이 정한 규칙을 이행하고자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② 위탁이라 함은 자료의 소유자가 자료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또는 부분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보존을 목적으로 자료원에 자료를 이전함을 말한다.

제3조(회원의 대상) 회원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각종 영화업자
- ② 영상관련 정부기관, 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 ③ 영상관련학교, 연구기관 및 도서관
- ④ 영화필름 및 영상자료의 수집 또는 소장가
- ⑤ 기타 자료원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관련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

제4조(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체회원
2. 개인회원

② 회원이 회원구분의 변경을 요청할 때 자료원은 이를 검토하여 변경 승인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자료원의 회원은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① 회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영화필름 등의 보존

등)와 자료원 자료관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거 회원이 제작 또는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자료원에 위탁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자료원이 정한 수집 및 관리기준에 의해 위탁하고자 하는 자료가 한국영화발전을 위해 보존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③ 위탁자료는 회원만이 이용 가능하며, 위탁자료 출고시 원 자료의 편집, 수정 등을 가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자료원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자료원이 정한 자료활용규칙에 의해 위탁자료의 일시 출고 또는 위탁해지를 할 수 있으며, 자료원이 이용 실비로 정한 자료정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자료원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존, 연구, 교육, 시네마테크, 정보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위탁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회원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 자료원이 자료보존을 위한 복제 및 매체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제영상자료원 연맹(FIAF) 윤리강령에 의거한 자료원에 의해 통제되는 또는 인지된 장소에서의 공익, 연구 목적을 위한 열람 및 상영, 문화적, 교육적 기조에서의 On-Line 정보 구축 및 제공에 동의한다. (단, 회원 가입 시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있을 경우 회원가입 신청 공문에 이를 밝힌다.)

⑦ 회원은 단체명(개인명), 대표, 연락처 등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나 저작권리(양수도 포함)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자료원에 이를 필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원의 임무) ① 자료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영화필름 등의 보존 등)규정에 의거 수탁자료의 보존 가치를 판단하여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자료원은 수탁자료에 대해 문화자원으로써 상당한 가치가 있음을 인지하고 보존에 필요한 최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자료원은 원본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④ 자료원은 회원이 위탁한 자료에 대해 자료원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존, 연구, 교육, 시네마테크, 정보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자료원은 자료의 보존관리를 위해 제9조에 따른 가입비 외에 별표 제2호로 정하는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6. 8.)

제7조(위탁 및 이용방법) 회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자료를 위탁 또는 이용할 수 있다.

① 회원은 위탁자료에 대한 내용 및 수량을 파악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1. 자료 위탁 신청서(서식 제4호)

2. 위탁자료 내역서(서식 제5호)

② 회원은 자료 위탁 시 자료원이 요구하는 사용인감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이용신청에 의해 출고된 위탁자료가 외부에서 훼손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료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위탁자료의 장기출고 이용과 입고예정일을 초과한 미입고 자료에 대해 자료원이 자료관리가 용이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의 조치 통보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혜택) 회원은 자료원이 정한 규칙 등에 따라 다음 각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회원은 위탁자료의 보존을 위해 무상으로 보존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회원이 위탁자료 및 자료원 보유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시에는 자료정리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회원은 자료원 시설이용의 우선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제9조(가입) 자료원의 신규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자료원이 정한 다음 각호의 회원가입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별표 제1호로 정하는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회원가입원서(서식 제1호)

② 서약서(서식 제2호)

③ 사용인감계(사용시 제출, 서식 제3호)

④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개정 2015. 6. 8.)

⑤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제10조(탈퇴, 제명 및 자격정지) ① 회원은 임의로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회원은 탈퇴 의사와 위탁자료의 처분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원을 제명 또는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서면 통보한다.

1. 자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

2. 위탁자료에 대해 제3자가 법률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분쟁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회원으로써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③ 자료원은 회원이 고지한 연락처에 연락 등을 통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회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회원 제명 또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④ 상기 2항에 의해 회원 제명 또는 자격 정지된 위탁필름에 대해서는 관리 문제에 대해 1월 이내 출고 또는 별도관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상기 4항의 정해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회원이 필름을 출고해가지 않으면 자료원은 당해 위탁필름을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해 위탁필름이 훼손되거나 폐기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⑥ 자료원은 위탁필름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분쟁 등의 사유로 법원의 명령이 있을 경우 해당 위탁필름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⑦ 탈퇴 및 제명, 자격정지된 회원이 재가입을 신청할 경우 자료원은 회원의 탈퇴 등의 사유를 검토하여 재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자료의 품질저하) 회원은 모든 위탁 자료가 보호 기준에 부합한 환경에서 보존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품질이 저하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자료원은 적절한 환경에서 유지된 위탁자료의 품질저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 칙 (2004. 1.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1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5항 개정 규정 및 별표 제2호는 이 규칙 발령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